



경기도의회 제391회(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고립은둔청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 경기도지사 제출 제2766번

2026. 6. 23.(화)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고립은둔청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요구이유

-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고립은둔청년)’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통해 운영하고자 공기관 위탁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고립은둔청년)

나. 위탁추진 근거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27조(청년의 건강증진)
-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등)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사무위탁 및 사업대행)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직무)

다. 위탁사무 내용

- 사업내용

가) 심리정서 프로그램(140명) : 자아회복, 관계형성, 일경험 등

나) 은둔특화 프로그램(25명) : 단계별 사회 연습 활동 등

다) 가족지원(280명) : 가족 교육, 자조모임, 도민 대상 예방교육 등

- 소요예산 : 350,397천원(국비 70%, 도비 30%)

- 예산 산출근거

세부항목	예산액(백만원)	세부내용
계	350.4	
당사자 지원	94.8	(심리정서 프로그램) 140명×90,000원×4개월 (은둔특화 프로그램) 25명×220,000원×4개월 (가족지원) 280명×20,000원×4개월
사업 운영비	71.7	회의비, 임차비, 인테리어비, 홍보비 등
인건비	176.9	약3,158천원×4개월×14명
위탁수수료	7	위탁비용 2% 이내

라. 수탁기관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마. 위탁예정 기간 : '26.07.01. ~ '28.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사. 2026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적정('26.05.22.)

3. 검토의견

■ 동의안 제출취지

- 본 동의안은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일상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한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고립·은둔청년)'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공기관 위탁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위탁예정기간은 2026. 07. 01.부터 2028. 12. 31.까지이며, 2026년 소요예산은 총 350,397천원(국비 70%, 도비 30%)으로 수탁기관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임.

■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 본 사무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27조(청년의 건강증진) 및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등)에 근거하여 심리정서 지원, 은둔특화 프로그램, 가족지원 등을 포괄하는 사업임.
 - 같은 조례 제10조(전담조직)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
 - 수탁기관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 청년정책 전문 공공기관으로, 현재 '2026년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당사자 발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

고 있음. 특히, 경기청년정책포털 등 홍보 창구를 운영하고 청년 중간조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고립·은둔 청년이 일상 회복 후 타 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등)으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27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도지사는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약계층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의 건강증진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예방 및 발굴
2.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조사·연구
3.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대면·비대면 상담
4.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자조(自助) 모임 지원
6.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공동생활 등 주거 지원
7.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학업, 진로교육, 일경험 등 취업 지원
8.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자립 지원
9.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10.10.]

제10조(전담조직) ① 도지사는 제6조 지원사업, 제7조 가족지원, 제9조 실태조사 등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0.10.]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및 지정·위탁의 취소, 전담조직에 대한 평가 주기, 예산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기관위탁을 통한 운영 타당성(지속 필요성) 검토

○ 본 사무는 심리정서 지원(140명), 은둔특화 지원(25명), 가족지원(280명) 등 대상별 고유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탈고립계획(ISP) 수립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청년 ON 사이트'를 통한 초기 발굴부터 일상회복 후 일경험 연계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이 요구됨.

- 수탁기관인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은 도내 청년정책 거점으로서 정책포털 등 자체 홍보 창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선제적 지원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고 핸드북을 제작하는 등 고립·은둔 청년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 역량을 이미 입증한 바 있어 위탁 수행에 적합함.

- 무엇보다 해당 재단이 도 자체 사업인 '2026년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전담하여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총 3억 5천만 원(국비 70%, 도비 30%) 규모로 신규 추진되는 본 사업을 동일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행정 인프라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지역 밀착형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사업 운영 예산을 살펴보면 4개월간 총 14명의 전담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176.9백만원)가 책정되어 있음. 관련 전문 인프라를 갖춘 기존 공공기관에 위탁함에도 단일 센터 운영을 위해 14명이라는 신규

인력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무 분장(센터장, 행정요원, 현장 전문 상담사 비율 등)과 인력 산출 근거가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수탁기관인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은 현재 도 자체 예산으로 '2026년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기 수행하고 있음. 이와 별도로 국비와 도비가 매칭된 본 신규 사업이 동일 기관에서 병행 추진될 예정이므로, 대상자나 실적이 양쪽 사업에 중복으로 산정되거나 예산이 이중 집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 분리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끝으로, 사업 계획상 '은둔특화 프로그램(25명)'의 경우 중복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향후 사업 성과 평가 시 실제 혜택을 받은 '실 인원(순수 인원)'과 누적 참여 횟수인 '연 인원' 간의 혼선 및 실적 과대 계상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상자 집계 및 실적 관리 기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음.

참고 1 | 2026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03
----------	------

제출연월일 : 2025년 10월 28일
제출자 : 경기도지사

1. 요구이유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통해 운영하고자 공기관 위탁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기도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무

나. 사업 추진 연혁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도의회 보고/동의	비고
1	'24.1.~'24.12.	경기복지재단 청년지원사업단	비대상	
2	'25.2.~'25.12.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비대상	

다.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근거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27조(청년의 건강증진)
-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등), 제7조(가족 등 지원), 제10조(전담조직)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사무위탁 및 사업대행)

2) 필요성

가)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며 당사자, 가족에 대한 지원, 현장의 역량강화 및 도민 인식개선 홍보 등 종합적인 업무 능력이 요구됨. 따라서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함

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총괄 및 행정지원을 경기도에서 하고, 실제 업무 수행을 재단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며, 공공영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시군 및 관계기관 협조, 도민 인식개선 홍보에 효과적임

라. 위탁사무 내용

1) 사업내용

- 가) 고립·은둔청년 발굴, 선정
- 나) 당사자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일상유지 지원, 가족 지원 등
- 다) 도민 인식 개선 홍보, 포럼 개최
- 라) 현장실무자, 상담사 연수, 매뉴얼 활용 지원

2) 소요예산 : 650,000천원(도비 100%)

3) 예산 산출근거

세부항목	예산액(백만원)	세부내용
계	650	
당사자 지원	435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1,200천원×300명 (일경험 프로그램) 50명×60시간×약1.5개월×12,152원
홍보비	70	모집 및 인식개선 홍보
연수	15	상담사, 현장실무자 연수 150천원×100명
인건비	89	약 4,440천원×10개월×2명
일반운영비	28	회의비, 임차비, 소모품비 등
위탁수수료	13	위탁비용 2% 이내

마. 수탁기관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바. 위탁예정 기간 : '26.01.01. ~ '28.12.31.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1)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음
- 2)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도(道)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전문 공공기관임. 또한 현재 2025년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수행 중으로 당사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가족교육, 인식개선 홍보, 현장실무자·상담사 연수, 매뉴얼 제작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 중임. 더불어, 고립·은둔 지원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국내에 전

파하기 위한 핸드북 제작, 일본연사 차담회 개최 등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다
방면으로 기여하고 있음

- 3) 2026년부터 지원공백 최소화, 중장기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권역별 공모사업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할 예정임. 재단은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 및 관리하고 프로그램
을 총괄 운영하며, 더불어 각종 청년중간조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고립·은둔청년의 일상회복 이후 타 사업 연계가 필요할 경우 그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4) 2025년 제6차 공공기관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적정('25.10.23.)

참고 2 |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발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3.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탁·대행사무명, 수탁·대행기관 등 위탁·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제5조(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출자·출연기관 설립 목적 부합 여부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지속성
3.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4. 성과 측정의 용이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사무의 수행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7. 그 밖에 위탁·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기관위탁·대행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7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위탁·대행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계속위탁·대행의 필요성 포함)
3. 위탁·대행사무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5조에 따른 위탁·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무를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무의 위탁·대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실적이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위탁·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출자·출연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위탁·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4. 위탁·대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